
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장종태 · 양부남
용혜인 · 이상식 · 이광희
임오경 · 박정현 · 신정훈
채현일 · 차지호 · 권칠승
위성곤 · 윤종균 · 최혁진
김성희 · 박지원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함. 그런데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 · 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불용 결정 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에는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형 산불과 같이 소방차량에 대한 긴급정비가 필요한 재난현장에서 소방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소방청장이 ‘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’을 구성 ·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소

방차량의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.

이 외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,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등).
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란 중앙소방학교·중앙119구조본부·소방본부·소방서·지방소방학교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항공구조구급대·소방정대·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기관을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의무소방원 및”을 “일반직공무원,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)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.

1.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
2.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
3.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
4.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
5.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

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경우, 소방청장은

재난현장에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4항에 따른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 제3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6조에 따라 매각하거나, 「물품관리법」 제37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.

제9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소방장비의 무상양여) ①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39조, 「물품관리법」 제3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소방기관”이란 중앙소방학교 · 중앙119구조본부 · 소방본부 · 소방서 · 지방소방학교 · 119안전센터 · 119구조대 · 119구급대 · 119구조구급센터 · 항공구조구급대 · 소방정대 · 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	3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----- -----.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7. “소방장비운용자”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.	7. ----- ----- -----일반직공무원,----- -----.
<신설>	제18조의2(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)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.
	1.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

	<u>2.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</u> <u>3.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</u> <u>4.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 에 편리할 것</u> <u>5.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</u>
제35조(소방장비의 정비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5조(소방장비의 정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4조 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경 우,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 소 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4항에 따른 소방차량 긴 급정비지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설></u>	
제39조(소방장비의 폐기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9조(소방장비의 폐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 비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</u>

<신 설>

제3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6조에 따라 매각 하거나, 「물품관리법」 제37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7조에 따라 조달청 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.

제39조의2(소방장비의 무상양여)

①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39조, 「물품관리법」 제3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「국제개발 협력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